



# 兌 兎 會 計 法 人

(TAEKYUNG ACCOUNTING CORP)

서울시 성동구 성주 2가 3동 19-2 번빌딩 3층

전화 : (02)464-0401 팩스 : (02)464-0490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대학교의 학교회계(교비회계)의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수익사업회계의 경우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수익사업회계에 한함) 및 자금계산서(수익사업회계의 경우 현금흐름표), 그리고 동일자의 종합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종합운영계산서 및 종합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2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대주회계법인에서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2년 4월 20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국제대학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은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방법과 상이합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대학교의 학교회계(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종합 재무제표는 2013 년 2 월 28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의 내용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법인 수익회계의 재무제표는 2013 년 2 월 28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19-2

태 경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金相云



2013 년 4 월 5 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3년 4월 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